

제434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6일(목)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 3
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3
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3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3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3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3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3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3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3

(13시35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이소영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기후특위 존속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총선 끝나고 저희 임기 시작하기 전에 기후특위에도 참여하고 계신 김소희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과 함께 기후특위 만들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온 게 벌써 엇그제 같은데 이제 활동기한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심해서 역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13시37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기후적응법이 올라와 있고요, 6항부터 13항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인데요.

서왕진 위원님, 혹시 아까 의견을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서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제가 4·16 행사를 가야 해서 가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적응 문제 중요하고 또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책임이 확고하게 입법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번 2035년 ND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한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양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숙의를 통해서 수렴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부가……

현재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산업정책 또 국제경쟁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입법부가 오히려 방향을 제시하고 잘 끌어갈 수 있는 신호를 정확하게 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늘 여러 부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들어서 그 안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선명한 시그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보면 그런 정책 의지의 불분명성 또 정책 시그널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EU나 또 중국 등이 훨씬 더 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도 훨씬 더 가볍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이제는 이런 혼선을 접어 두고……

특히 입법부는 정책의 방향, 정책 시그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주는 방향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로드맵을 정립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들을 입법부가 책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오늘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차후에 좀 더 진지하게 참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3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기후적응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가시기 전에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전 논의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 가지고.

말씀 주셨던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노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으로 있었다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다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짧은 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표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분들도.

그 짧은 게 왜 위험했느냐면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네 번의 토론 과정의 자료를 전부 다 봤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입법부가 이 법안 발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저희가 한 열 가지 정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오늘 이 회의 전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적응법을 논의를 할 거고요. 적응법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론화위에서 반드시 국민들한테 알려 드렸어야 되는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감축경로별로 재정 소요나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가계에 미치는 부담, 취약계층 및 전환 피해지역 지원 규모를 추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감축경로별로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유출의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앞서 서왕진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축경로별로 가지고 있는 기후 편익비용분석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만약 그런 비용추계 내용들을 전달받았으면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처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축경로별로 기후편익과 감축비용을 함께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저는 오늘 오전까지는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선형·오목형·후행형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전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산업의 설비 전환 기간이라든지 상용화 가능 기술, 투자 회수 리스크 등 생산비 상승 효과를 비교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 열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응법을 논의하는 그 중간에라도 준비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김소희 간사님께서 방금 요청 주신 자료들을 제가 목록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메모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만들 수 있는 자료도 그중에 있고 딱 들었을 때 저런 게 외국에서 감축경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온 적이 있었던가 하는 자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관님, 감축경로별 일자리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같은 거는 이게 불확실성이나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본 기억이 나는 자료들은 어떤 종류의 자

료냐면 예컨대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늘어났을 때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얼마 생성된다 이런 자료는 봤지만, 사실 어떤 감축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워지고 축소되는 산업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발전하고 생성되고 확대되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선진국들에서 감축경로를 얘기할 때 감축경로별로 일자리가 어떻게 된다, 몇 명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가 예컨대 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비슷한 계수나 분석 방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추정 자체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자료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그거를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조지연 위원 그런데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요구 열 가지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만드는 게 가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료나 숫자를 만들게 될 텐데 그게 신뢰가 가능해야 되고, 어떤 다른 국가들에서 그런 비슷한 자료를 만든 사례가 있으면 그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열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들으면서는 저런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나 또는 다른 국가에서는 저런 게 제시된 적이 있었나 하는 자료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좀 클리어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李憲昇 위원 그거를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야지. 정부 측에서 제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그런데 답변 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 요구를 13일 전체회의 때 하셨다는 거지요?

○김소희 위원 오늘까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연 위원 조지연입니다.

박지혜 위원장님께서 평소 회의 진행을 굉장히 원만하게 잘해 오고 계시는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해서 오늘 선형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감축경로별로 이 선형에 따른, 다들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입법 조치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지난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때 많은 다수의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김소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다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실은 자료 요구를 다수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제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다 제출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 충분한 부처의 어떤 설명들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감축이 선형별로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떤 노동적 측면에서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신산업이 발전해서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 효과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조차도 이런 내용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것조차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무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부처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 법안 논의가 있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충분히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양쪽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차관님, 혹시 기후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실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어제 김소희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았고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 제출을 요청해 주셨는데 총 열두 가지 사항입니다. 열두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있고 아마 추계라든가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먼저 감축경로별로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추계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학술적으로나 기타 여러 기관, 일부 기관에서 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지만 전제조건이나 아니면 과학적 분석 방법,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또 일부는 현재 그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일부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요청하셨던 시한까지 맞춰 제출 못 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언제까지……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로도 공식적으로 자료……

○김소희 위원 리스트 전달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앞서 공론화에서 나온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늦었지만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공론화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 커서 그래서 자료 요구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공론화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논의가 있었어야지 국민들이 이해는 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그냥 감축경로별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된 내용은 최소한 전달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부처에서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부처, 재정부라든지 산업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실 거고요.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공론화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한다면 저는 다시 또 다른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할, 위헌소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한다면 저희는 최소한 이 자료를 갖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기후특위뿐만 아니라 기노위에서 논의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논의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방금 말씀하신 자료 목록,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차관님, 제가 보기에는 의제 자료집에, 예를 들어 비용편익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의제 자료집을 찾아봤는데요. BAU 시나리오와 1.5도 경로 사이에 손실이나 비용 이런 것이 김형준 교수 발제자료, 이준이 교수 발제자료 등등에도 일부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전반에서 이런 비용편익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 과정에 제시한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발췌해 가지고 의원실에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약간 호도된 것 같고요. 공론화위원회의 발제자료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처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게 맞냐라고 일단 답변을 좀…… 만약에 그거에 동의한다 하면 부처는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대한 내용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산업부도 같이 논의를 하셨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GX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셨을 거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라면 당연히 준비하셨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렸던 겁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먼저 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李憲昇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재정적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계가 안 된 법안들이 많다고 그렸는데 우리가 오늘 논의할 법안들도 사실 의원입법이거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내셨는데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 것인지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법안을 논의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 추계 정도는 저희들에게 공개를 해야지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각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인지 추계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의원발의 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예산정책처, 국회 안에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같이 법안에 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부안은 아니라서 그 각각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부한테 요청하는 것은 조금 적합한 방식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의원입법 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면 사실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다시 해서 받아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 말씀도 맞고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비용 분석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법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제정안 제11조, 조문별 검토 목차 2번까지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12쪽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지난번 소위에서 법체계 관련해서 법안 체계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문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쪽을 잠깐 먼저 보시면, 제1장 총칙에서 6개 조를 담아 났고요. 그다음에 제2장에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및 기후위험 평가로 해서 제7조부터 14조까지 담았습니다. 제3장은 기후회복력 증진이라는 장으로 취약계층 및 산업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제15조부터 20조까지 담았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21조부터 29조까지 담았고요.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들,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들,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장에는 벌칙 조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보험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해서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후보험 관련 정보 누설 또는 직무상 부당한 이용 이런 것들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타 법 조항을 참조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등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내용들이 제정안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없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의견은 기본법 관련해서는 기본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기본법 37조의 기후정보통합플랫폼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은 이미 제정안 부칙에 반영이 돼서 중복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제정안 제7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과학성·효율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통합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의 현황과 통계 그다음에 각종 정보 통합 관리를 매년 작성하고 제출하고 매년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부분들은 하위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주는 게 좋

겠다 이런 판단에서 ‘매년’은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운영을 하는 데,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는 차원에서 ‘매년’은 삭제하자는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 추진, 제정안 제12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통합의견에 찬성합니다. 기후위험지도를 기후위험 공간정보로 명칭을 수정하고 관련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만—김소희 의원안에서 주셨던 내용인데요—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추진 시에도 기후위험지도 사전 검토하는 문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위험이라든가 적응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복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항들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지표,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에 대해서 김소희 의원안에 기후부장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 권고 가능하다,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김소희 의원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당초 정부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권고보다는 앞부분에 포괄적인 평가지표를 통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필요하면 권고도 할 수 있다는 조치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61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관련해서 ‘주류화’를 ‘확산’으로 명칭 변경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동일하게 기후부장관은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쪽……

○소위원장 박지혜 잠깐, 61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료에는 삭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수용으로.

○소위원장 박지혜 60페이지도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동일한 의견입니다.

64쪽,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주요 업무에 기후위기 적응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은 삭제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67쪽입니다.

기후보험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기후보험 특례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근거 반영에 관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후보험 운영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는 정부라기보다는 사업 집행기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소희 의원안에 있던 기후보험 운영계획 수립 부분들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보험 운영관리 비용 지원 내용들은 관련된 조문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해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68쪽입니다.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장 신설에 따라서 정부가 다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체계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입니다.

신설 조문과 관련해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기후보험 관련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분에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관련된 벌칙 조항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난 소위 이후에 수석전문위원 통합의견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차관님, 그런데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뛰어넘은 부분은, 설명 안하신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나머지 부분은 통합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이미 동의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것은 동의하는 것도 설명하신 것도 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의견 주신 거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제정안 제7조 관련해서 기후부가 ‘매년’이라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셨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 협력 의무 규정인데요. 관할 지역 기후위기 적응정보 현황·통계를 매년 작성·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이종배 위원 삭제해도 별문제 없지요?

○김소희 위원 문제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매년’을 삭제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사실상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계별로 작성 주기라든가 작성 시점, 어떤 것은 2년 단위, 5년 단위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매년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계 주기가 각 아이템별로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추후에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이라서 법에 굳이 ‘매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보 생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을 삭제하자는 뜻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기후적응법에서,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인데요,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밑줄 하신 이 부분을 ‘부문별 영향’으로 포괄해 가지고 규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정의 규정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2조인가요? 이 부문별 영향이라는 게 기후위기의 영향이 특정 부문에 미치는 영향인지, 환경매체에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별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는 뜻인지 이 ‘부문별 영향’이라는 용어가 전반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 너무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기후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디에 규정돼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통합법안 2조 4호, 기후위험에 대한 정의 조항에 ‘부문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이후부터는 ‘부문별’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 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총괄적인, 언급했던 개별 부문별 영향과 파급효과를 개별적인 영향까지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 그다음에 파급효과, 이 두 측면이 다 같이 고려되지 않았나, 부문별 영향과 총체적인 영향, 파급효과까지 두 측면을 다 같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이 ‘부문별’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는 앞에 열거된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현재 조문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비근한 예로 사실 벨렌지표 같은 경우도 여기 열거됐던 적응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이렇게 해도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상당 부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이고 소관하고 있는 분야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관계부처, 유관부처와 같이 기후적응 대책들을 같이 수립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소영 위원 제가 소위에 이번에 보임을 하게 돼 가지고 그 이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제정법을 만들 때 그 안에 여러 규정과 제도와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 쟁점별로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법

안 보고를 듣고 정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하나씩 축조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소위 때 법안 심사 설명을 따로 한번 들으신 것 같고 오늘은 정부 측에서 발췌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은 지금 1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들으신 법안 설명과 정부가 조금 전에 밝힌 의견과 이것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문별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조항도 많고 제정법이어서 큰 법인데 이것 중에 이견이 있는 것을 이렇게 조각조각 얘기하게 되면 토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정법은 하나씩 축조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 그렇게 축조심사를 소위에서 진행을 해야 전체회의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조지연 위원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소위원장 박지혜 지난번에 사실은 법안소위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지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가르마를 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어떤 사정은 저희가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한 게 아니고 지난번 직전 회의 때 그런 사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예.

○李憲昇 위원 1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고 정부 측 의견도 오늘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페이지당 하나하나 짚으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그러면 통합의견에 따라서 20페이지부터 통합안이 있는 것이잖아요.

○李憲昇 위원 11페이지부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조문별로 쟁점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앞의 조문들도 그렇게 심사를 해서 이 쟁점이 좀 정리가 되면 통합조문으로 쭉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의 부분은 통합조문을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어떨까요?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항별로 하자고 하시는 것이니까, 제정법이니깐 당연히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이종배 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종배 위원 다 동의해요. 위원장 하시는 대로 다 동의해요.

○**김소희 위원** 딱히 의견이 없어서 조문별로 하셔도 큰……

○**조지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때 막 몰아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김소희 위원** 시간 돼서, 급하시다고 해서 그냥 가셨던 거라……

○**조지연 위원** 그때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서 가지고……

○**소위원장 박지혜** 약속된 회의 시간이 그때까지였잖아요.

○**김소희 위원** 그런데 그 약속된 회의 시간은 저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행정실에게만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그냥 12시에 갑자기 끝난 상황이었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양당 보좌진들께서 협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김소희 위원** 아니요. 어쨌든……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편하게 진행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자료 20쪽, 조문 1조부터 일단 축조심사 식으로 해서 제가 쪽 읽어 보겠습니다.

통합의견 우측 보시면 제명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단 통합의견을 만들었고요.

‘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4개의 개정안을 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 가능한’이라는 문구가 다른 안들에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예상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서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2조(정의) 부분입니다. ‘1호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호, 기후위기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호,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4호,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이하 부문별이라 한다)’라고 약칭했고요.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5호,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부문별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호,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호,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사회 전 부문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4개의 제정안을 통합해서 그리고 명확화를 위해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8호,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지난 저희 특위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이 정의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5쪽의 ‘9호,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본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말한다’.

‘10호,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다음, 3조(기본원칙)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명과 1조, 2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소희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조문별로 보는 것이니까 1조, 2조 하고 의견 없으면 통과. 하나씩……

○조지연 위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는 취지였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2조까지 읽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법안 심사를 해 보면 ‘조문별 검토’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그것을 1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이때까지 논의된 제명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렇게 쟁점 정리를 일단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지는 않았어 가지고……

○李憲昇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축조는 생략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다 한번 숙지를 한 것이니까.

○김소희 위원 다 아는 내용이라서……

○李憲昇 위원 이소영 위원님 주장하신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예.

○李憲昇 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축조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이소영 위원 이현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제 취지입니다.

○조지연 위원 그렇지요?

○李憲昇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소희 위원 이 법안을 보자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李憲昇 위원 법안은 저희들이 다 그것을 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11페이지부터 해서 제명 그다음에 목적, 정의 하나씩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조문별로 ‘이건이 없으시지요?’를 자주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李憲昇 위원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법안소위에서는 축조심사까지 했다고 해 가지고……

○조지연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그러면 위원님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법 제명에 대해서 통합의견 참고하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저는 의견 있는데요. 제명 중에서 저는 조지연 의원님 안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제일 잘 담아내는 제명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기후위기에 적응한다고 하면 이것은 되게 소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평균 온도가 올라갔고 기후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자는 내용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조지연 의원님 안의 제목은 단순히 적응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조금 더 능동적인 의지와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 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조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다만 ‘특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통합의견처럼 ‘법률안’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위 실행법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李憲昇 위원** 발의자들 두 명이 논쟁해 봐요.

○**김소희 위원** 저는 동의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말씀하시지요.

○**김소희 위원** 저도 회복력 강화라는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정부 측이 동의하면……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위원**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안’.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부 의견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제명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목적 규정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조 정의 규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李憲昇 위원**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소영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실래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4조의 ‘부문별’이라는 용어가 계속 걸리긴 하는데요. 3조에도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되긴 해서 그때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부문별이라는 내용을 따옴표로 하면 나중에 이게……

○**소위원장 박지혜** 계속 인용이 되거든요.

○이소영 위원 아, 5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거기에도 부문별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3조 5호에도 기후 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부문별 적응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부문별 적응시책 간에 정합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부문이 약간……

그래서 그 부문이라는 게 되게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개괄적으로 환경·경제·사회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부문별’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그 부문이라는 용어가 이 법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부문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넓어서 이것을 실제로 적응시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 실제로 정책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이 법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래서 ‘부문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배출 감축 계획 같은 것도 굉장히 부문을 정교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건물, 산업, 수송, 농축산, 폐기물 이렇게 부문을 견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적응시책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배타적으로 의미 있는 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부문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소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일까요? 그러니까 부문별이라고 이것을 약칭하지 않고……

○소위원장 박지혜 약칭을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문들이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이것만 딱 있으면 되는 건지 이 각각이, 예를 들어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배타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소영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중요하게 계속, 나중에 이 계획들을 만들 때 섹터가 되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 해외에 기후적응법이 있잖아요. 적응법과 적응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부문 구조가 어떤 건지를 기후부에서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다른 나라의 기후적응법과 관련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기후적응과 관련해서 벨렌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렌지표는 잘 아시다시피 7개 부문별로 38개 목표가 있는데 부문별로 보면 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 이렇게 부문별로 되어 있고 또 정책 주기별로 영향·취약성평가, 계획하고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학습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벨렌지표를 저희가 국내에 적용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매치가 되는지 한번 봤는데요. 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에 관련된 건 이번에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 반영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 주기별로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문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에 생태계, 생물다양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아마 포함이 된 걸

로 보여지고 해양·수산, 산업, 방재, 산업이란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조금 벨렝지표하고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 조문에 분야별 내용 구성과 벨렝지표의 부문별 내용들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기후적응대책에 관련 부분들이 부문별로 반영돼 있고 기후적응대책에서 평가 그다음에 정책 성과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인프라, 문화유산이 거기는 상위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류의, 그러니까 하위에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할 것인가를 법에서 일종의 기준을 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정의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이소영 위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빈곤같은 경제적인 위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밑에 환경, 경제, 사회에는 포괄될 수 있지만 앞에 부문별에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은 산업밖에 언급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처의 역할들이 일부…… 부처가 역할을 소관하고 있는 분야를 아마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복지부가 하고 있는 부분, 농림식품부가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업부 이렇게 해서 부처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부문을 나뉘었던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도 제시해 주시고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2조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염태영 위원 위원장님, 오늘 기후위기적응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염태영 위원 오늘 시간을 대략 몇 시까지로 예상하고 진행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오늘은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부터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나가면 몇 조에 걸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전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 배분이 적합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대략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하는 방식이 과연 적합한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속도도 안 나고 하나하나 예민하게 따져야 될 사항이 많지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법안 심사에 있지 않아 가지고 오늘 법안 심의를 하는 체계를 잘 이해가 어려운데 이를테면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염태영 위원 4개의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걸 가지고 통합해서 정부가 의견을 정리한 게 있고, 그런데 다들 쫓나? 제정법인데 어떻게 4개 법안이 이렇게 정확하게 통합성이 일치하고 있어요? 어디 모법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논의할 때 염태영 위원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속도가 이렇게 가 가지고 오늘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저는 3조부터 법안을 차라리 읽으면서 상기하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읽지 말자고 하셔서 가지고 읽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소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개정법이면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법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걸 신중하게 토론한다는 의미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 이걸 오늘 처리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부 의견 처음 들은 건데 토론도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정법이니까 어느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염태영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빠르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1회독을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는 없는 것으로 하고.

3조, 기본원칙입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김소희 위원** 시간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일과시간 6시까지니까요.

○**염태영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1시간만 더 합시다, 4시까지. 지금 2시 반이거든요. 3시 반?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도 장기 감축경로 논의를 그래도 일차적으로 오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장기 감축경로에 대해서……

○**염태영 위원** 그래도 대략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오늘?

○**소위원장 박지혜** 일과시간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염태영 위원** 그러면 2조, 3조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3조, 기본원칙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배 위원** 5초 기다리고 아무 얘기 없으면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규정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이 법안을 축조심사 겸 해서 통합법안을 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4조 책무 조문 읽어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1항,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에 대한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2항,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보급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범위를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4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응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냥 ‘시책’으로만 규정한 개정안 있었지만 ‘적응시책’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6항,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 4조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4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6항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뒤에도 또 사회기반시설이 계속 이 법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6항에서 얘기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게 조금 명확한가요?

기후부 의견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통칭 사회기반시설은 통상 통신, 도로 이런 인프라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통칭 사회기반시설은 다른 법령 조문에도 충분히 인용되고 있는 문구라서 조문으로서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따로 개념 정의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의견……

○소위원장 박지혜 예.

○염태영 위원 우선 네 의원의 법안 안에 통합의견은 수석전문실이에요, 정부 측 의견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같이 협의한 겁니다.

○염태영 위원 같이 협의해서 나온 거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주로 정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염태영 위원 거기 비고는 그때 그렇게 고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면 되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염태영 위원 사실은 이게 부처로 보면 행안부 또 국토부, 복지부, 기후부, 여러 부처의 적응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이 정부, 지자체의 이러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라고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이 법안은 결국 그렇더라도 기후부 중심 통합 법안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후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의견 듣고 의견 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여러 부처로 행안부, 국토부라든지 복지부까지 포함한 이런 부처의 통합 일을 하는데…… 이 법만 있으면 실질적인 권한과 조정 수단이 없어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후부가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저번에 지난 소위에서도 그 논의가 있어서 기후정책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기후부가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문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는 없어도 다른 데는 있다 이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한 가운데 실질적인 조정이라든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이 법안 어딘가에는 기후부가 갖고서 범정부 부처의 일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통합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소영 위원 4조 3항에 보면 의원님들 안은 대부분이 ‘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의견은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국가예산을 얼마큼 어디에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책무규정,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는 정도의 규정인데 이것을 양성……

인력 양성이야 해야 되는 거지요.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하여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통합의견이 정리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염태영 위원 조지연 의원안이 그렇게 돼 있어.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 1항과 2항은 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에는.

○이소영 위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정부 측과 협의해서 조지연 의원님 안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협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큰 이견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 이견 없으시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정부 측이 이견이 없으면 그냥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노력 의무조항이 아니라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수용 가능합니다.

○김소희 위원 수정하지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3항은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조.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통합의견 5조 읽어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앞부분에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감축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은 적응과 관련된 법인데,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를 국민과 사업자에 부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국민과 사업자는 적응시책에 참여하는 것도 책무지만 지금 회복력 강화에 대한 책임이나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보다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는……

○염태영 위원 제목에도 합당한 취지로 살리고.

○이소영 위원 예.

이것은 정부가 문구를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뒤에서 만드셔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금 혼란의 소지는……

이게 감축과 관련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과 사업자는’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은 당연한 문구라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바로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만 규정해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염태영 위원 그 뜻 플러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와 관련된 적응시책에’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다는 애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환경 정책의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잘 협력하고 참여해야 그게 잘 되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규정하는 의미로는 이해했는데요.

사실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조지연 위원 이것은 아주 당연한……

○소위원장 박지혜 당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범위를 줄여 주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줄어들면 우리가 적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응과 기후영향 완화랑 그 두 가지 측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저는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기후 회복력 관점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여기에 뭔가 넣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소영 위원 5조는 문구를 조금 생각해 보고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적응시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요. 5조는 뭔가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염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적응시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의 구문은, 물론 이소영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안의 큰 주제를 아예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뒤에 그 내용만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김소희 위원 적응은 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요. 사전에 방재를 더 강화하게 하고 그런 지점들이 더 커서……

국민이 이상기후에 어떻게 더 대처를 합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요구가 담긴 게 기본적으로 적응과 회복력 강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가 요청하는 부분의 적응시책에 열심히 잘 따르면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게 수동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 제안은 뭐냐 하면 이 법의 정의규정에서의 사실 키워드는 기후위기도 기후위기지만 기후위험이잖아요. 기후위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이 사회가 적응하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기후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이 법에 더 적합해 보인다는 취지거든요.

○조지연 위원 너무 한정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적응시책에 참여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한 시책에 참여하는 건데 앞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엄청난 홍수나 이런 것에 대비하지 못해 가지고 지난 힌남노 때 공장이 몇 개월 동안 침수를 당했잖아요? 말하자면 기후위험을 겪은 건데, 사실은 사업자나 국민들도 단순히 그냥 적응시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화된 기후위기나 기후재난에 있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지연 위원 그래서 그 앞단의 그 내용이 사실 더 포괄하는 내용인 거지요.

○김소희 위원 적응법 자체가 그것을 목적하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콘셉트의 법률에서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라는 게 기후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조지연 위원 기후위험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한정되는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해 보면 어떨까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없으시면 6조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시책 및 관련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염태영 위원 정부 측에 의견 좀 여쭙볼게요.

기후위기 적응이라든지 적응시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느어느 부처에 어떤 법률이 있는지는 혹시 전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후위기와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물관리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관계부처라든가 유관기관도 파악해 놓은 법률들은 다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법 만들 때도 우리가 늘 염두에 되야 될 것이 다른 부처의 다른 법령하고의 정합성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그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로 놓고 그 법안에 대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한 번쯤 늘 고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염두에 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다음번 이 회의 때는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특히 국토위 소관 법령하고도 교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염태영 위원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큰 사업이, 미래 국토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별도 법으로 준비되고 있기도 한데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기후재난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는 단계에서 모든 국토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금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로 또 한편 전면적인 개선에 들어 가야 될 기본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그것 외에도 아마 다른 부처가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늘 이 법에서 갖고 있는 취지와 정합성을 한번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또 상당 부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조.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조문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견에 8조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정안들은 7조부터 시작하지만 조문 순서를 내용에 따라서 재배치해서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먼저 8조부터 읽겠습니다. 7조는 그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제8조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입니다.

1항, ‘정부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에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부문별 영향,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고요.

다음 쪽, 5항입니다.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취약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쪽, 6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7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8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다른 조항은 비교적 무슨 내용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5항 같은 경우에 이게 작성 주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쟁점이겠지만 취약기관이라고 하면 이 취약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그런데 이거를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해서 기후에너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취약기관이라는 게 어떤

기관들이고, 예를 들어 한 기관을 택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이소영 위원** 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도로·철도·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이다라고 했을 때 침수 위험에 대한 적응정보라고 하면 침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 그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자로 하여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5항이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현재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들을 고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교통·수송 부문, 에너지, 용수, 환경, 기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기관과 관련해서는 교통·수송 부문에서의 취약기관들이 도로공사, 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부문에도 기후위기 위험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 발전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용수 관련된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상수도 같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환경은 또 국립공원공단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들이 쭉 있고요. 이런 기관들을 취약기관으로 보고 취약기관에 대해서 일단 적응대책과 관련된 부분, 정보 이런 것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해당 분야별로, 기관별로 소속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수범자가, 그러니까 규율 대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후 적응정보 현황과 통계를, 관련 고시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그다음에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수범자들의 그런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로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취약기관들이 생성해야 하는,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적응정보가 뭘 말하는지, 어디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지금 논의되던 의견 정리된 거면 제가 다른……

○**소위원장 박지혜** 예.

○**염태영 위원** 저희가 의원입법 안으로 순서를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제7조가 통합의견으로 빠져 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수정의견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게 빠져서 그것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8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7조에 성안된 문안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뒤에 나옵니다.

○염태영 위원 별도로 나오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7조는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먼저 있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정보 수집·관리가 들어가는 거라 그 내용을 7조에 넣기로 하고 8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아마 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8조에 대한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또 그와 관련해서 똑같이 9조·10조가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9조는 55쪽에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55쪽?

○소위원장 박지혜 뒤쪽에 쪽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9조는 55쪽, 그다음에 7조는?

○소위원장 박지혜 52쪽.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8항에는 공개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공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지혜 7항에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8항에는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공개’까지 추가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이견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5항의 주기 문제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보 생산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라면 ‘매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매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7항에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런 거를 다 모아 가지고 통합 관리하고 결과를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주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기가 지금 다르니까 이 주기를 언급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주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고시되어 있는 기관인데, 취약기관인데 어떤 데는 5년 전 자료만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이게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걸 통합관리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 자체가, 이 8조 자체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오히려 그 주기를 맞추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조지연 위원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각종 지표,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쪽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 주기로 기후적응대책을 발표하면서, 물론 5년 주기를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후적응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도 하고 관련 통계나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년 주기로 기후적응대책과 맞춰서 하는 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사실은 정부로서는 5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5년 주기로 하자니까 이것은 매년 새롭게 바뀐 환경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매년 하자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냥 ‘매년’이라는 말을 슬쩍 빼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정부 계획이라는 건 그래도 각종 정보 통계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본계획 5년과 달리 이것 정도는 그래도 매년 바뀌지 않으면 그 시점에 맞는 통계를 쓰더라도 매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 규정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년 한다고 하면 이것 기후에너지부장관한테 제출을 하면 되지…… 기후에너지부장관은 이것을 통합 관리하고 결과 공개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지자체에도 사실 이것을 전달하는 거고, 이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까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조지연 위원 이것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가야 나중에 협력할 때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뒤의 규정에 다 나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주기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되는 것들이라도 어쨌든 매년 공개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기를 맞춰서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41조를 보니까 취약기관, 딱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이 취약기관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데 5항이 왜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 똑같은 취약기관, 41조 1항에 따른 취약기관이 5년마다 적응대책을 만들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이것을 똑같은 대상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탄소중립법 41조의 제명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법에서 이미 이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응법, 하위법인 건데요. 하위법에서 이것과 별개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해서 하라는 것 자체가 중복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또 기본법에는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을 삭제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차관님?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이게 중복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정부 의견은 이것 이견이 없다면서요.

○염태영 위원 맨 처음에 전제가 그렇게 시작됐지.

○이소영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논의하고 넘어가셨던 사항인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논의사항에서 보면 현행 기후위기 적응 등을 다루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의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후부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달아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칙에서 제외해서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19쪽의 표를 보시면 기본법상의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들이 기본법의 37조부터 4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이 적응법 심사할 때 검토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 지금 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문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중복되는 것들이 걸러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지금 ‘41조가 뭐지?’라고 보면서 발견을 한 건데 이것은 명백한 중복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공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보유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훨씬 더 추상적이잖아요. 기본법이 원래 추상적이고 실행법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건데 기본법에 이미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 기한, 제출 대상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내용 이것까지 지금 대통령령에 다 있는데요. 이행실적 작성에 대한 내용도 지금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추상적이잖아요. 적응정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적응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의조항에 있지만 무슨 적응정보인지……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한 적응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 현황하고 같은 의미 아닌가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심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저는 적응대책은 조금 더 그 기관의 행동과 관련한 측면일 거라고 생각했고, 이 법안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적응정보는 조금 더 그 기관의 관할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분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한 조항이니까 기후적응대책의 일반적인 개황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보를 축적해 가자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이고, 적응대책을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과는 또

별도의 측면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별도의 의미는 있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발의하시면서 생각하신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조지연 위원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에 중복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 법안에도 포괄해서 가야지 뒤에 나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의 구체성이 이 법안에는 더 담겨 있으니 그 상위에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를 할 때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서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을 건어 내고 활용하는 측면만 저희가 이것을 규정하기에는 법안이…… 그러면 사실은 기본법에 개정안을 해서 담겨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기본법과 적응법, 이것의 적응과 관련한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일단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정부가 이 자료에 나온 대로 기본법과 이 제정안은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 그리고 실행 방안을 규정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줘서 그에 따라서 정부 측과 협의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복해서 둘 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너무 과잉 의무들을 막 중첩해서 만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기본법에 있는 의무는 대상이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후에 취약한 시설을 갖고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거고, 그 대책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떤 걸 점검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 그 이행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뭘 제출해야 될지가 좀 명확한 편인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는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적응정보라는 정의는 다시 탄소중립기본법 2조 11의2로 갑니다. 여기는 세 줄이라서 엄청 긴데 끝부분만 읽어 보자면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얼마든지 간에 또 이 적응법에서 이 여러 개의 기관에 제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하고는 어떤 다른……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 적응대책을 만들 때 만들어진 자료를 다시 매년 업데이트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조지연 위원 제가 지난번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통계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실적에 한정된 통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반적인 법률 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의 중복되는 측면, 이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들은 다른 법률, 여기는 기본법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물론 기본법의 조항들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법안을 협의할 때는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왔습시다마는

기본법하교의 일정 정도, 기본법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게 과거 실적통계뿐만 아니라 미래 적응정보 현황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들로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단순 과거의 어떤 실적만 규정하는 통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기본법과 이 조항에 대한 상충 문제, 중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안을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차관님, 저희 기본법이 있을 때 현재 취약기관들은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생김으로써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지 그것을 두 개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염태영 위원 2시간 됐네.

○소위원장 박지혜 예, 그래서 저희가 10분 정도만 쉬어 가려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조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부에서 기본법과 적응법과의 어떤 중복에 대한 우려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조지연 위원 차관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소영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법 제41조에 취약기관이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런 실적들을 제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적응법에서는 당초 저희가 과거 대책, 그러니까 41조 기본법에서는 대책에 중점을 뒀 갖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내용들을, 어떠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고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다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주로 보고하는 내용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그 내용들을 받아 보니까 기후대응이라기보다는 재난과 관련된 실적들, 성과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다시 기후위기 대응, 기후대응을 위한 그런 정보나 관련 실적들의 제출은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엄연하게 법안으로만 보면 관련된 부분에서 적응에 대한 관련된 실적이나 대책도 같이 보고가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기후적응법에 있어서는 취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현황과 통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통계라는 것들은 단순히 재난 현황이나 재난 통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가뭄인 경우에는…… 아니면 홍수라든가, 홍수의 발생 과거 몇 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예측치, 그 예측치를 넘어서는 부문 이런 것까지 고려한, 확률적으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기후위험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들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과거 20년간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앞으로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그릇을, 커패시티(capacity)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관련된 현황들을 매년 작성을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역별로, 부문별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기후적응법에 그대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후위험지도,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기후위험에 공간정보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체계로 저희는 당초 구상을 했다는 차원에서 사실 기본법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현황과 통계, 기후대응이라는, 기후대응 부분에 관한 현황과 통계에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후적응 정책들, 시책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 조문이 들어갔다는 점을, 일단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관련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에도 기관의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기후변화 영향의 조사·분석·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이 항목에 뭐가 빠진 게 필요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항에 추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요, 입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그러면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기후부에 질의 회신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규정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 기본법에 있는 적응 조항이 11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항까지 하면, 항 개수로 하면 굉장히, 몇십 개가 있는 거거든요,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적응과 관련된 조항이. 그런데 이것은 적응법이 없을 때 만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법에 있어야 될 내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좀 체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적응과 관련해서 자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제정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는 것을 또 다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 법도 찾아보고 저 법도 찾아보고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의미가 뭔지를 규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이

11개 조항에 대해서 기본법에는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것을 남겨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료제출과 관련된 조항을 적응법으로 이관한다고 하면 기본법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게 하는 게 사실 효율적이잖아요.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적응계획도 5년에 한 번 내야 되는데 그 적응계획에는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까지 다 넣어야 되고 그것에 이행실적을 또 매년 내야 되는데 그 이행실적에 추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행실적을 낼 때 그것을 붙여서 내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법의 적응 조항하고 이 적응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그것을 반영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적응법이 생기기 전에 기본법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겠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루었는데, 그게 과거 실적 위주에 머물러 있고 어쨌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공간정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평가라든지 위험 평가라든지 기후 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예측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게 뒤에 나오는 어떤 사업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법이 정말 기본법으로서 그냥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성을 맞추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적응법의 어떤 조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이 정말 말 그대로 모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을, 기본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가져오시면 오히려 이야기가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이소영 위원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법에서 41조는 빼고 그 내용을 적응법에 반영하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응계획 제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을 다음 회의 때 가져오게 하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말씀, 논의되는 걸 보면 사실 두 법의 관계를 검토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조지연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박지혜 그것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차제에 그것을 잘 정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이해하셨지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해했습니다. 현재도 일부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은 제정법의 부칙 조항을 통해서 일단 삭제가 되고 이렇게 일원화시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되면 그런 식의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완벽하게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법에서 주는 선언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본법으로 해서 규정의 실익이 있는 거고 그것은 살려 둘 수 있으면 살려 두되,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책무·의무가, 현황이나 정보를…… 대책을 만들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생겨 버리니까 두 법에서 의무가 좀 더 가중될 것이

다라는 우려,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본래 기본법이라는 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 넣었는데 개별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법을 만드는 거니까 실행의 의미가 더 있는 조항들은 여기에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후부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위에서 다음에 좀 더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지금 8조를 했는데요. 10조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김소희 위원 계속하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다 정리를 할까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지금 이 41조 외에도 적응과 관련된 게 조만 11개가 있고 항으로는 30개가 넘는 거여서 이것을 차제에 이 규정뿐만 아니라 기본법하고 이관을 한다거나 중복을 제거한다거나 하는 안을 정부가 통합안에다가 추가해서 그 안을 제출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논의하기보다는, 그 안을 다음 회의 때 가지고 오면……

○김소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을 새로 가져오시면 그 안으로 다음번에 논의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말씀 맞으시지요?

○이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지적하셨던 부분은 타당한 것 같아요. 이 적응법의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기본법 안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적응하고 회복력 강화가 중요해서 따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난번 공청회 때 많은 전문가분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법과 이 법안에 관해서 관계 정립은 한 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 저희 논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적응법에 대해서는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받은 다음에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일단 적응법은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 기후부에서 기본법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새로운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법안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측에서 추가로 더 오셔야 돼 가지고 잠깐 산업부 들어오시게……

○조지연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자료는 다 왔나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린……

○**김소희 위원**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논의를 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십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 목록을 저희도 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김소희 위원** 제출은 했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부에서 혹시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자료제출을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저희가 사실 상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일부는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상당히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제 주셔서 바로 저희가 대응하기에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 전까지 제출은 좀 어렵다는 말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진행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일단 보시고 싶어 하시면 한 번 다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희는 자료 없이는 논의 자체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 의견들 오는 것 보니까 산업부와 재정부는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부처 간에 조율도 필요할 정도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공론화 때 TV 토론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면서 산업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다들 출석을 꺼리셔서 가지고 실은 산업계 의견도 반영이 많이 안 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거ですよ.

그런데 산업 경쟁력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특위에서 산업부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는 자리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 특위 위원분들은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적응법 때문에 다음번 소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그때 다시 또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 의견은 일단 이 관련된 자료들도 쟁점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쟁점이 뭔지는 한 번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도 들어 보고, 사실 토론이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쟁점이 뭔지 전문위원 보고는 한 번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고, 단순히 감축 목표에 관련된 법안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조항들도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세 가지 안 정도가 있으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이소영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안이 있고 어떤 쟁점이 있고 쟁점별 정부 의견이 뭔지는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금방 이소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좀 들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자료를 12개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번호를 매기서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정도는 저희들이 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에서 이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안 심사 전까지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열두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지연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부처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기후특위 시작하고 2035 NDC 그것 얘기했을 때도 감축 수단 그리고 수단별 재원 이런 것 요청했을 때, 아직도 저는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방금 감축경로별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2035 NDC를 준비하면서도 일단 요청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괄적으로, 구체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감축경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감축경로대로 조사라든가 분석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제조건과 그다음에 파급 영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시경제 변수,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제출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명시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것은 제출 안 하겠다라는 의미랑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게 번호가 넘버링 돼 있지는 않은데요. 제출 요청하신 자료 방금 받아 보니까 첫 번째 것은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IPCC가 권고한 감축경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그런 취지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 회의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요. 어차피 이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밝히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굳이 꼭 이것을 자료로 사전 제출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을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맨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은 이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의 특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자체를 그대로 편익에 반영한다고 하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편익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여만 발라내서, 지금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배

출량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 극히 일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물리적 리스크가 차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편익은 아주 미미하게 나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비용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예컨대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또는 부동산 정책을 하고 이런 거랑은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기후부가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 감축경로, 감축 강도, 감축의 속도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편익에 대한 학자들 내지는 해외 기관들의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모아서 제출하는 것 정도가 이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예컨대 철도 사업이다라고 하면 KDI의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수도 있고 단가도 있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한 비용편익분석의 규정이나 룰은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정답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오는 것 정도를 마지막 이 항목에 대한 요청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쟁점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조지연 위원 아니요, 한마디만……

○소위원장 박지혜 새로운 의견 있으신가요?

○조지연 위원 아니요,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속된 말로 아웃데이티드(outdated)됐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그 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해외 사례와 기존의 문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해외의 모든 어떤 지표와 이런 걸로 단순 우리 국내에 대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문제 지적하신 것과는 조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어떤 얘기랑 배치되지요?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 해외하고 똑같은 환경이 아닐 텐데,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을 때 저는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해외 사례와 문헌을 가지고 이걸로 대신해서 정리하자라는 건 조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언제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 못 할 이유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분석을 하고 있고……

○이소영 위원 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여기까지 의견 들었고요. 지금……

○이소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목이 많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조지연 위원 저는 감축경로별 비용 측면에 있어서 분석한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하시고 있다고 하니……

○김소희 위원 아웃데이트돼 있으니까 업데이트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2035 ND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감축경로별로 몇 가지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소영 위원 그게 B/C 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어떠한 형태든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자료, 유의미한 통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걸 그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 이외에 대외적으로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지연 위원 차관님, 그런데 이걸 아까 전의 말씀과 달라지셨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자료를 놓고 토론하는 거와 비슷한 토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저희 위원님들끼리 전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구하신 자료가 있고 이걸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 주셔야 저희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 심사 때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 위원 자료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李憲昇 위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박지혜 이헌승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안 심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사전에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해도 사전질의서 같은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미리 좀 주신다면 우리가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법안 과정에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두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 한 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 정도의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여기서 정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

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최대한 저희가 그 가부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사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쟁점을 우리가 오늘은 좀 확인을 하는 의미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상정한 법안들에 대해서 검토의견, 설명을 듣고 오늘 가능한 한 정부 측 입장 확인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다음 법안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좀 간략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법안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6항부터 13항까지의 자료인데요.

법안 처리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 법안 외에 이소영 의원님 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소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한 번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사이에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처리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셔서 뭔가 또 추가적인 의결을 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의결하셨던 법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소영 의원님 안은 통과가 됐었지만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NDC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적으로 같이 자료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에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그리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탄소예산 부분은 표에 보시면 하단 서왕진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조문 위치만,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인 기본원칙보다는 제8조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 들으시겠지만 탄소예산 부분은 정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NDC) 규정입니다.

2030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개정안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30년 목표치에 대해서 미니멈부터 최대치까지 40%에서 50%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단의 표를 보시면 30년에 대해서 제시하신 의원님도 있고 현행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표에는 참고로 현재 정부가 제시해 놓은 NDC 목표와 함께 IPCC 경로 그리고 선형경로를 좌측에 부기를 했으니까 각각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년 목표치에 대해서는 미니멈이 55에서 65%까지 분포돼 있고요. 중간에 61%, 60%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목표치에 대해서는 70%에서 85%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치도 표에 기재가 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년 목표치에 대해서는 85%에서 95%까지 돼 있습니다. 중간에 90% 목표치도 제시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특이하게 선형감축경로 비율에 따른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규정이 있으시고요. 감축 수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비율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왕진 의원님 안은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시에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과 이소영 의원님 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보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하단에 보시면 시행령 위임 여부, 현행법에서는 시행령 위임을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고요. 정혜경 의원님 안, 서왕진 의원님 안은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판결 취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NDC, 공론화 결과 등 그리고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순배출량으로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문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은 20년 또는 2050년까지로 설정하는 개정안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입니다.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은 20년, 10년 또는 5년 그리고 2050년까지로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연도별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하단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감축기술의 상용화 여부, 배출량 감축 추이 및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별개로 또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 재검토 시에 고려할 사항에 탄소예산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박지혜 의원님 안에서는 ‘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문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신뢰할 만한 탄소예산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탄소예산이라는 과학적 근거 기준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합의된 산출 기준이 없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있으셨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의 심의 등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재검토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님 안은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변경, 신규 설정 시에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김위상 의원님 안은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새로 설정, 변경 시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요.

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변경 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하단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4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미 기개정된 사항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데요. 중장기감축목표 등 설정·변경 시 고려사항 추가입니다.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제5항 1호부터 9호까지가 현행 규정

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혜경 의원님 안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계시고요.

서왕진 의원님 안은 탄소예산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이 9호를 삭제하고 계시면서 서왕진 의원님 안과 같이 탄소예산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추가하시고 또한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동,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가 동법에 신설되었음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의 중장기감축목표 등 설정·변경 시에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제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면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다만 지난 4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서 국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점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6개월, 3개월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았고요.

기타 경과조치 및 적용례는 관련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각각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김소희 간사님도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들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지금 듣기보다는 위원님들 관련해서 이미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조금 의견과 지금 출석한 정부위원들에게 질의응답 정도 하시고 다음에 법안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법안 심사를 계속 이어 가는 건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중차대한 문제니까 사실 오늘 한 번에 다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적용법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설명은 첫 번째 회의에서 듣고 두 번째 회의는 또 정부 의견만 듣고, 이게 뭔가 종합적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느낌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이, 예컨대 지금 여기에 보면 2030년 목표에 대해서까지 개정안을 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2030년 건 그냥 그대로 두자는 거고 정부 의견은 모르지만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라도…… 그냥 아예 논쟁 대상이 아닌 것들도 몇 개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 의견을 좀 들어야 오늘 몇 가지는 그래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어쨌든 뭐가 쟁점인지라도, 정부하고 사이에 뭐가 쟁점인지, 여야 사이에 뭐가 쟁점인지 뭐라도 알아야 그사이에 고민도 해 보고, 저희도 사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랑 저희랑 의견이 다르다면 저희도 사실 정부에 의견을 더 물어야 되고 자료 요청을 해야 되니까 정부 의견을 지금 안 들을 이유가 있나요, 이미 나오셨는데?

○김소희 위원 그러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요. 시간을 다시 정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자료 안에 보면 다른 부처의 의견들도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 의견과 상관없이 부처 간의 이견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 때는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부처분들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료 된다 안 된다,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가부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내일까지 주실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가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소희 위원 아니지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은 이것에 대해,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비용편익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일단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자체가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IPCC 근거에 따라서도 이미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저희는 선형을 하든 불록을 하든 오목을 하든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형과 불록과 오목에 대한 피해비용에 대한 설문지 조사는 마치 선형과 불록은 대단히 피해를 주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설문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 공론화 설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비용에 대한 것들은 일단 시민들은 정보를 받지 못한, 이 정보는 ‘왜 갑자기 여기는 피해비용이 크다고 나오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것의 근거자료는 최소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가부만 일단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든지 구체적으로 하든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료가 와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앞서 자료 요구의 쟁점은 정리를 했잖아요. 자료제출을……

○김소희 위원 그 답변을 안 주셨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 하시기로 했잖아요. 자료제출을 최대한 해 주시고……

○**김소희 위원**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안 주셨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자료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쟁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법안 심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박지혜** 같은 얘기 하시는 것 아니지요?

○**조지연 위원** 이게 좀 이견이 있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감축경로별로 정부의 입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법안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했고 정부도 어떤 입장이 있을 텐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장을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근거가 감축경로별 비용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지표에 의해서 정부가 당연히 입장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제되는 지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잠시 멈추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소영 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님은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일부러 오셨잖아요,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료도 지금 두세 장 배포가 돼 있고. 그런데 오늘 다른 부처 얘기도 들어 봐야 된다는 말씀 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와 있는 부처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안 듣고 돌려보낼 이유가 있는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다 좋고 우리가 최종 의결할 때, 최종 입장을 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정부 의견 자체를 듣지 말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출석을 했고 아마 세종시에서 오셨을 텐데……

○**조지연 위원** 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는 분명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 공유가 되면 저희도 논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원래 판결문도 주문이 있고 근거가 있잖아요. 결론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건데 결론을 듣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는 결론을 말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이소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산업부가 멀리서 오셨으니까 산업부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 저는……

○**李憲昇 위원** 듣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이소영 위원** 산업부 의견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오셨는데……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기후위기대응위원회하고 기후부하고 산업부가 나와 있고요. 저는 정부 의견 꼭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나와 계시니까 질

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셔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김소희 위원** 혹시 부처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듣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자는 게 저희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시면 하시고요. 답변을 주시고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확인할 내용들을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쟁점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조항별 정부 의견은 듣지 말자는 합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지금 정부 측이 합의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 요청자료 중에 첫 번째 것은 기후부에서 지금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 같거든요. 지금 이 부분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요. 이것은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뭘 분석해서 숫자를 알려 달라는 게 아니라. 김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신 요구자료 첫 번째 것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누가 읽으시고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李憲昇 위원**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것만 한번 해 봅시다.

IPCC가 권고한 감축경로는 국가별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가정해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을 배분한 결과로 한계감축비용이 낮고 감축잠재력이 큰 국가와 부문에서 더 많이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개별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자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면 입장 자료를 한번 밝혀 달라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기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헌법재판소도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해 이제까지 국가별 누적 배출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국가의 경제 규모, 이행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승온도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목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여배출 허용 총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적 책임, 과거 책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이행능력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일반론적인 방법, 규칙, 정해진 표준화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거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IPCC가 권고한 내용들을 그대로 국가 목표로 받아들이기는 일정 정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1번은 그러면 답이 된 거네요. 그런 거지요?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IPCC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답변 주신 거잖아요?

○이소영 위원 예,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고.

○李憲昇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안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다’.

○이소영 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기후부차관님,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2035년 감축 목표는 범위형으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상한 범위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정 취지—그 실시되어 있는 취지들이요—그리고 IPCC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까지 참고하셨을 거고요. 고려된 상태에서 상한을 61%로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상한 설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요. IPCC 권고 부분도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R&D라든지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더 기울여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적어도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도록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상한 목표는 IPCC가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 요소였고 다른 여러 가지 종합 검토의 결과로 하한과 상한이 제출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이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에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공론화와 관련해 산업부도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제공되는 자료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실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의제와 관련한 자료집에 들어갈 자료들을 산업부에서도 제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시민 공론화가 9주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감축목표의 의욕성에 있어서는 IPCC 1.5℃ 기준 이상의 의욕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축경로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담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조기에 많이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감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크다, 그런 정보가 제공된 가운데 시민대표단이 그런 속의 결과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공론화 결과는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 공론화 결과를 받아 봤을 때 산업부는 그러면 중장기 감축경로

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전체적으로 작년에 NDC 발표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과감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또 전체적으로 미래사회의 부담을 균등하게 저야 된다는 측면에서, 레인지로 53~61%까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실효적으로 또 산업계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공론화 결과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다만 산업계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 발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세부적으로 5년 주기의, 35년부터 숫자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실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내용적으로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산업계 부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당연히 기업의 부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이게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이런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그 관점이 제시가 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저희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하는 개선 입법이라는 점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국민의 환경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감축목표 수립은 과학적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예산의 개념 같은 것이 활용,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았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기후정책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점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부 입장을 여쭙는데 이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기후특위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탄소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아니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셨는데 조금 더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후목표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져갈까라고 봤을 때 기후과학의 측면에서 IPCC 글로벌 평균 감축경로에 대한 기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후정책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탄소예산이 대략 87.4억t이다, 이게 숙의자료에도 중요하게 인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세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할 때 장기 감축경로가 저는 35년에 65%, 40년에 85%, 45년에 95% 감축이다, 이러한 기후과학에 근거한 목표를 법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손을 듭)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의견도 잠깐만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예.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어떠한 기준, 이것을 어떠한 잣대를 갖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IPCC 권고, IPCC를 통해서 탄소예산을 산출한 그런 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과학적·기술적 잣대, 국제사회의 책임에 부합하는 원칙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분석해 가지고 비교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봤을 때는 조기 감축경로가 가장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우수하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저는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용편익에 대한 계속되는 자료 요구가 사실은 기후과학, 기후정책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기후부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설득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국은행이 감축경로에 따라서 어떤 감축경로가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 작년 말에 기후부에 제출한 자료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작년 말 지난 NDC 결정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재경위 국감을 하면서도 한국은행이 이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하고 경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기 감축 비용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한국은행의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항목하고 가장 최근 근래에 분석된 그리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말하자면 비용편익분석 자료일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제가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헌승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李憲昇 위원** 장기 감축경로는 향후 수십 년 간 우리 산업구조라든지 에너지 체계, 기업 투자, 일자리, 국민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오늘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의견은 부서 자체에서 마련한 검토의견입니까, 아니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산업계와 간담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아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산업부 차원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저희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잠깐만 간략하게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DC를 국가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최대한 높은 쪽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법안 안쪽에 35년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법안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한에서 시작했으면, 최소한의 규모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들을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35년 이후에 50년까지 가는 경로 설정도 가능하면 선형경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李憲昇 위원** 선형보다도 더 낮게? 그게 산업계의 의견입니까?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미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도 여러 부처나 특히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53~61% 레인지로 35년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애써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나 미래세대 대표들 의견이 짧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일찍이 없었던 미래세대 의견까지 숙의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낸 게 시민대표는 78%, 청년 미래세대들은 75%, 이렇게 초기에 좀 더 강하게 감축목표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단·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자부 입장은 산업계의 의견은 선형보다 낮게, 53%보다 낮으면 이전에 제기했던 48% 수준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불합치 또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최소 53~61%, 더 빨리,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수렴했는데 퇴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미래세대 대표들이 국회에 오셨고 의장님도 만나고 여기도 오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뭘 어떻게 하느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하시던데 제가 ‘여러분들이 더 빨리 높이라고 의견을 주셔서 부담스럽다. 지금 정부는 53%도 어렵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61%는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담을 느낀다라고 아이들한테, 학부모임도 계셨습시다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딱 맺을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정부라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산업계 의견만 일방적으로 대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렵지만 61%라고 하는 IPCC 권고에 입각해서 그렇게 추동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해서 이것을 높이고 빨리 나아가게 할 거냐, 감축목표에 도달하고. 또 연도별로, 부문별로 감축목표나 감축 수단과 방법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가 점점 진전이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책무가 산업부든 기후부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그랬습니다. 한다고 해 놓고 못 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목표 자체를 낮추어서 달성하지 못했다, 괴리가 컸다 이런 지적 피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기후위기 상황이 절박하고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산업부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견은 오늘의 산업계 입장이고요. 오늘의 산업계가 제시하는 의견이 내일의 산업계에는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법안이든 정책이든 논의함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일하고 있는 산업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일하고 산업을 이끌어 갈 분들, 20년 후에 취업하고 일하고 일자리 만들어 갈 분들의 입장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산업계의 입장만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것은 산업부가 할 책임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감축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 총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의견에 이 일을 맡기면 그만큼 산업구조 개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후의 감축 부담은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산업계의 입장만 고려해서 이걸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아이들이 취업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되면 그때는 더 큰 감축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연된 효과로서 감축 부담이, 총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1%의 상한이 나온 이유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61%를 얘기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겨 있는 현재 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IPCC 권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을 판단해 봤을 때 적어도 35년에 61% 감축은 이루어 내야지만 이후에 다가올 미래의 산업계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산업부가 53%보다도 밑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기후부의 입장인 것이 아니라 53~61%라고 하는 목표를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산업부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표의 큰 틀 안에서 의견을 내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53~61%까지 가야 된다는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35년에 하한이 5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의 판결,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찌 됐건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하거나 미루는 쪽으로 안 되도록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 의견이시면 산업부 입장을 쓰실 때 조금 용어 선택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정부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입장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의 대한민국 압축성장을 이끌어 왔던 산업계를 너무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그렇고요.

산업부 실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때 그 기업들이 오늘 당장만 보고 일을 합니까? 저는 포스코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0년, 20년 장기로 가는 기업으로, 100년 기업, 200년 기업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저는 기업들을 폄하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산업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싫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높아 감에 따라서 산업계가 느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게 부담이 되고 진짜 회사가 어려운 지경까지 간다면 저는 그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앞에 많이 줄이는 게 미래세대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업이 없어져 가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계의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부의 검토의견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나 산업부나 심지어 뒤에 재정부, 기획예산처까지 의견들이 약간 약간 다 다릅니다. 저희가 다음에 법안소위 할 때는 다양한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서 저희가 감축경로 설정을 할 때는 진짜 많은 숙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 지점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인 부분은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그 경로가 부재했으니까 이걸 시그널을 잘 줘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의지의 표명을 하라,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의 표명은 각 국가가 에너지 공급 사정이든지 산업구조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입법기관에서 판단할 재량을 충분히 인정한 거라고 저희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서 여러 차례 거쳐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더 논의될 수 있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오셨는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차장 홍동곤 저희는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저희는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서 안을 제출하면 그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의견 제출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와 공론화 과정, 2개의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민간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창훈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공론화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의견을 받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원들 다 임명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공론화 취지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나중에 심의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제4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김소희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현승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